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
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역량중심의 승진문화 조성
과 신입직원의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한 심사승진 일원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경위계급으로의 속진 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(안 제86조, 안 제91조)

특별승진 근거에 속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절차 등 규정 등

나.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개선

1) 경정 심사승진 비율 상향 및 경장 심사승진 일원화(안 제52조)

중간관리자인 경정계급의 현장경험 부족 등 시험승진 부작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심사승진 비율을 현행 70%에서 80%로 상향하고, 순경계급의 입직초기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해 심사승진으로 일원화

2) 승진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반영비율 조정(안 제58조)

역량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연공에 관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반영 비율을 현행 70%에서 80%로 확대

다.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정비

- 1) 지방청별 채용 시 임용권 위임에 따라 지방청장이 명부 연장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(안 제18조)
- 2)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98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해양경찰청장은”을 “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승진심사”를 “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“70퍼센트”를 “70퍼센트(경정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80퍼센트)”로, “30퍼센트”를 “30퍼센트(경정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20퍼센트)”로 한다.

제58조제2항제1호 중 “70퍼센트”를 “8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30퍼센트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한다.

제72조제1항 중 “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, 30퍼센트”를 “70퍼센트(경정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80퍼센트)를 심사승진후보자로, 30퍼센트(경정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20퍼센트)”로 한다.

제86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경위계급으로의 임용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역량검증 등 평가절차에 선발된 사람

제91조제2항 본문 중 “제5항”을 “제5항, 제6항”으로 한다.

제98조 중 “관한 사무”를 “필요한 자격,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8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) ①·② (생략)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, <u>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18조(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</u> ----- -----.
제52조(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<u>승진심사</u> 에 의한 승진(이하 “심사승진”이라 한다)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(이하 “시험승진”이라 한다)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. 1.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빼 인원의 <u>70퍼센트</u> 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, 나머지 <u>30퍼센트</u> 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	제52조(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70퍼센트(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80퍼센트)</u> ----- -- <u>30퍼센트(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20퍼센트)</u> -- --.

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
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
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
르게 정할 수 있다.

2. (생략)

⑤·⑥ (생략)

제58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)

① (생략)

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
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
산정된 평정점(評定點)을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
영하여 작성한다. 다만, 법 제10
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
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
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
제2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
르지 않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
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
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
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
수 있다.

1. 근무성적 평정점: 70퍼센트

2. 경력 평정점: 30퍼센트

③ ~ ⑦ (생략)

제72조(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----.

1. ----- 80퍼센트

2. ----- 20퍼센트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2조(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

등)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
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
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
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
보자로,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
보자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86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
진)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
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으로 한다.

1. (생략)
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
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사람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3.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등) ① -----

---- 70퍼센트(경정 계급으로
의 승진의 경우에는 80퍼센트)
를 심사승진후보자로, 30퍼센트
(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
에는 20퍼센트)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6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
진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
경위 계급으로의 임용을
위한 별도의 평가 절차에
따라 선발된 사람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1조(특별승진심사) ① (생략)

② 제86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 대상자가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8조제2항,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. 다만, 제86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③ (생략)

제9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

제91조(특별승진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제3항, 제5항 및 제6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

----- 필요한 자격,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 -----

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
리할 수 있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	
연 락 처	(032) 835 - 2535